

 신안산대학교	<b>교직원 윤리 규정</b>	규정번호 2-1-16 제정일자 2011.12.12. 개정일자 2021.08.20. 책임부서/팀·계 기획처
---------------------------------------------------------------------------------------------	------------------	---------------------------------------------------------------------------------

## 제1장 교직원 일반적 윤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교직원은 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고,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 할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명예와 이익존중의무)** ① 교직원은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적절히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교의 유 · 무형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사사로이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규정준수의무)** 교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위남용금지)** 교직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교육 및 지도의무)** 교직원은 학생에게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6조(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 ① 교직원은 동료교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2019.11.14. 개정>

② 교직원은 동료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 · 종교 · 국적 · 장애 ·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9.11.14. 개정>

**제7조(성희롱 금지)** 교직원은 동료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2019.11.14. 개정>

**제8조(개인정보보호)** 교직원은 동료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사로이 이를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2019.11.14. 개정>

**제9조(경직금지)** ① 교직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총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의 비상근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교육과 연구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 제2장 교원 강의와 학생지도에 관한 윤리

**제10조(강의 및 공정한 학사관리 의무)**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강의의 내실을 기하며,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11.14. 개정>

**제11조(학생지도)**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품성 및 전문능력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사지도 등을 위해 학생면담에 정기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장 교원 연구에 관한 윤리

**제12조(기본의무)** 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사업의 신고와 공개의무)** ① 교원은 연구책임자 혹은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학교를 통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교육 · 연구 활동에서 혹은 학교의 자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특허나 발명 또는 발견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소유권의 귀속은 학교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 관리)** 교원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생명윤리존중의무)** 교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생명윤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피연구자의 권리보호의무)** 교원은 연구 사업을 수행 할 때 피연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업적 평가자로서의 의무)** 교원은 타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제18조(연구업적 보고자로서의 의무)** 교원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보고할 때 제반 규정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장 교원 교내외 활동에 관한 윤리

**제19조(기본의무)** 교원은 임시업무 등 학사행정업무에 협조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제20조(교외활동)** 교원은 사적으로 행동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에 대학이나 부설기관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봉사)** 교원은 대학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 제5장 직원 행정업무에 관한 윤리

**제22조(기본의무)** 직원은 전문행정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고 봉사하는 태도로 근무하여 구성원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

**제23조(청렴의무)**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신안산대학교 교직원 윤리강령(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안산대학교은 진리, 박애, 성실의 교훈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인성을 갖춘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주어진 의무와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실천요강 >

**◆ 교 수 ◆**

하나. 교수는 교육자로서 교수 및 연구 활동에 열의를 다해 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교수는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품위 유지를 위해 힘쓰고, 불명예스러운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구성원과의 화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교수는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 평가에 공정을 다한다.

**◆ 직 원 ◆**

하나. 직원은 대학 행정의 주체자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친절한 태도와 봉사 정신으로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직원은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구성원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

**◆ 학 생 ◆**

하나. 학생은 전문 지식 과 교양, 인성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미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하나. 학생은 학습 및 연구 활동에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통한 학점취득 행위를 하지 않으며, 대학 내 공공의 자산 파손이나 도난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하나. 학생은 대학 구성원들 간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가진다.